

# 國會에서의證言 · 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03. 1. .  
제안자 : 정치개혁특별위원장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234회국회(정기회) 제1차 위원회(2002.11.8)에서 국회관계법  
심사소위원회,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, 정당관계법심사소위  
원회를 구성함.
- 나. 2002년 11월11일, 11월12일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와 2003  
년 1월14일, 1월16일, 1월20일 간사회의 결과 허태열 위원,  
천정배 위원, 이경재 위원, 임인배 위원, 김용학 위원, 김택  
기 위원, 김근태 위원, 송영길 위원의 서면동의로 국회에서  
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.
- 다. 제235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(2003.1.20)  
는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 
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뿐만 아니라 안건심의를 경우에도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國會에서의證言・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

國會에서의證言・鑑定등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第10條(檢證) ①<u>委員會는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議決로 檢證을 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第10條(檢證) ①<u>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